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93년 11월 9일
 나. 제안자 : 부 천 시 장
 다. 회부일자 : 93년 11월 9일
 라. 상정일자 : 93년 11월 16일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김충신)

가. 제안이유

- 소사구 심곡본2동 주민 848명으로부터 심곡본2동을 심곡본동으로 명칭변경요구 청원건이 제출되어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 변경된 명칭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초 명칭으로 변경(환원)을 요구하므로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행정동의 명칭변경(소사구 심곡본2동 → 소사구 심곡본동으로)

다.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여타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였는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결과는?	• 동단위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음. • 대다수 지역주민들이(85%이상)심곡본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국도변의 상가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지역주민들로부터 동명칭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개정되는 사안이라고는 하나 지난 2월 1일자로 심곡본2동으로 분동하고 다시 동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으로 추후 행정동의 분동 시에는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3
의 결	제24회
년 월 일	(93. 11. 20)

제출년월일 : 1993. 11.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사유

- 소사구 심곡본2동 주민 848명으로부터 심곡본2동을 심곡본동으로 명칭변경 요구 청원건이 제출되어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 변경된 명칭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초 명칭으로 변경(환원)을 요구하므로 주민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동의 명칭변경(소사구 심곡본2동 → 소사구 심곡본동으로)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별표] 중 구명 및 동명란의 소사구 심곡본2동을 소사구 심곡본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별표]중					[별표]중				
구명	동명	동장 정수	동사무소 위 치	관할구역	구명	동명	동장 정수	동사무소 위 치	관할구역
원미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원미구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 음)
소사구	심곡본1동	(생략)	(생략)	(생략)	소사구	(현행과같음)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심곡본2동	(생략)	(생략)	(생략)		심곡본동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소사본1동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소사본3동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범 박 동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현행과같 음)

현행					개정안				
[별표]중					[별표]중				
구명	동명	동장 정수	동사무소 위 치	관할구역	구명	동명	동장 정수	동사무소 위 치	관할구역
소사구	괴 안 동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역곡 3동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송내 1동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송내 2동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오정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오정구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3년 11월 9일
- 나. 제안자 : 부 천 시 장
- 다. 회부일자 : 93년 11월 9일
- 라. 상정일자 : 93년 11월 16일(제1차 총무위원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진흥과장 이효선)

가. 제안이유

- 1993. 1. 1. 청소년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나. 주요골자

- 법 제정 내용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 위원회 변경